

세법연구 13-04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운영현황

2013. 9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홍 성 훈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유 지 선 공인회계사

이 형 민 공인회계사

목 차

I. 서론	7
II.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9
1.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9
가. 개관	9
나. 예정신고 및 납부	10
다. 예정고지 및 납부	11
라. 확정신고 및 납부	12
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14
가. 개관	14
나. 예정부과 및 납부	14
다. 확정신고 및 납부	16
3. 부가가치세 사업자별 신고 현황	17
가. 사업자별 신고 현황	17
나. 사업자 규모별 신고 현황	19
III.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23
1. 영국	23
가. 개관	23
나. 일반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24
다. 연차회계제도(Annual Accounting Scheme)	28
라. 요약	31
2. 독일	32

가. 개관	32
나. 신고납부제도 운영 현황	32
다. 요약	34
3. 호주	35
가. 개관	35
나. 신고납부제도 운영 현황	37
다. 요약	40
4. 일본	41
가. 개관	41
나. 신고납부제도 운영 현황	42
다. 요약	45
5. 체코·덴마크의 신고납부제도 개정내용	47
가. 체코	47
나. 덴마크	48
다. 소결	49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51
1. 국제비교	51
가. 사업자의 구분	51
나.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51
다. 예정신고(고지)제도/중간예납제도/중간신고제도	52
2. 시사점	55
가.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및 신고납부기간의 세분화	55
나. 대규모 법인사업자에 대한 신고납부기간 단축	56
참고문헌	59

표 목 차

〈표 II-1〉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개정 연혁	13
〈표 II-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개정 연혁	16
〈표 II-3〉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18
〈표 II-4〉 사업자 규모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20
〈표 III-1〉 영국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5
〈표 III-2〉 영국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26
〈표 III-3〉 영국 연차회계제도의 장단점	29
〈표 III-4〉 영국 연차회계제도의 납부기한	30
〈표 III-5〉 영국의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요약	31
〈표 III-6〉 독일의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요약	34
〈표 III-7〉 호주의 사업자 매출규모별 GST 신고납부기간	38
〈표 III-8〉 호주의 사업자별 GST 신고납부제도 요약	40
〈표 III-9〉 일본의 사업자별 소비세 신고납부제도 요약	46
〈표 III-10〉 체코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개정내용	48
〈표 III-11〉 덴마크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개정내용	49
〈표 IV-1〉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비교	54

그림 목차

[그림 II -1]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3
[그림 II -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7
[그림 II -3]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 추이.....	19
[그림 II -4] 법인사업자별 차감납부세액 신고비율.....	22

I. 서론

-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음
 -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통해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하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의 경우에 한해 정부가 경정·결정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함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해야 함

-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6개월이며 과세기간 개시 후 최초 3개월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두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과세기간 동안 총 2회(예정신고 1회, 확정신고 1회) 신고·납부할 것이 요구됨
 - 다만 일반과세자 중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해주기 위해 예정신고납부 대신 예정고지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보다 완화된 신고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이며 과세기간 개시 후 최초 6개월을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당해 기간에 대해 과세당국이 고지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 반면, 부가가치세제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다양한 신고납부기간을 적용하고 있거나, 일부 사업자(특히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 단기의 신고납부기간을 적용하는 등 우리나라 제도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특히 신고납부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와 주요국의 입법례를 비교·검토하고자 함

- 본 보고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및 신고납부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신고납부제도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및 신고납부 현황을 살펴봄
 - 제Ⅲ장에서는 부가가치세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 중 영국, 독일, 호주 및 일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를 살펴보고, 최근 신고납부제도를 개정된 체코 및 개정 예정인 덴마크의 제도 개정내용을 살펴봄
 -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Ⅱ.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 부가가치세법은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통해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함
 - 납세의무자가 신고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에만 2차적으로 과세권자인 정부가 경정·결정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을 확정시킴

- 이하에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납부제도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 일반과세자는 다시 예정신고납부 대상인 법인사업자와 예정고지납부 대상인 개인사업자로 세분하여 살펴봄

- 또한 사업자 유형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사업자별 세액신고 비율과 세액증감 현황을 파악함

1.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가. 개관

-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1년을 2기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연 2회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 다만, 조세수입의 평준화와 부가가치세 일시납부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확정신고기간의 전 3개월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동 기간의 세액을 예정신

고·납부하도록 하는 예정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함

- 일반과세자 중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예정신고·납부로 인한 납세협력비용의 부담을 완화함

나. 예정신고 및 납부

-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 후 연 2회 확정신고 의무만을 부담하나 조세 수입의 평준화와 납세의무자의 납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예정신고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 및 일부 개인사업자만 예정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며,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에 따른 납부의무를 부담함
 - 개인사업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 ‘다. 예정고지 및 납부’를 참조
- 1976.12.22 부가가치세법 제정 당시 예정신고기간은 2개월로 납세자는 1과세기간 중 2개월마다 2회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했음
- 1978.12.5 법개정 시 납세자의 신고업무의 번잡성을 덜어주기 위해 2개월의 예정신고기간을 3개월로 연장함
 - 따라서 사업자는 1과세기간 중 1회만 예정신고·납부할 수 있게 됨
 - 3개월로 연장된 예정신고기간은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의 예정신고기간은 다음과 같음
 - 제1기: 1.1~3.31
 - 제2기: 7.1~9.30
-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함¹⁾

1)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로 함

-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조기환급을 위해 기신고한 과세표준 및 기납부한 납부세액은 이중신고 방지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않는 등 여러 불이익을 가함
 - 예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예정신고·납부 대상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조기 환급도 배제됨

다. 예정고지 및 납부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일반과세자 중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납부세액을 고지하여 징수함²⁾
 - 1976.12.22 부가가치세법 제정 당시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예정고지·납부제도가 없었으나 개인사업자의 신고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93.12.31 법개정 시 개인사업자에 대한 예정고지·납부제도를 신설함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봄³⁾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3)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 제5항

-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예정 고지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⁴⁾의 50%로 결정되며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결정세액을 징수해야 함⁵⁾
- 징수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 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함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해야 함⁶⁾
-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4.1~4.10
 - 제2기 예정신고기간분: 10.1~10.10

라. 확정신고 및 납부

- 일반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함⁷⁾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1976.12.22 부가가치세법 제정 당시의 과세기간과 동일함
 - 제1기: 1.1~6.30
 - 제2기: 7.1~12.31
 - 일반과세자가 과세기간 중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4) 직전기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결정 또는 경정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함

5)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

7)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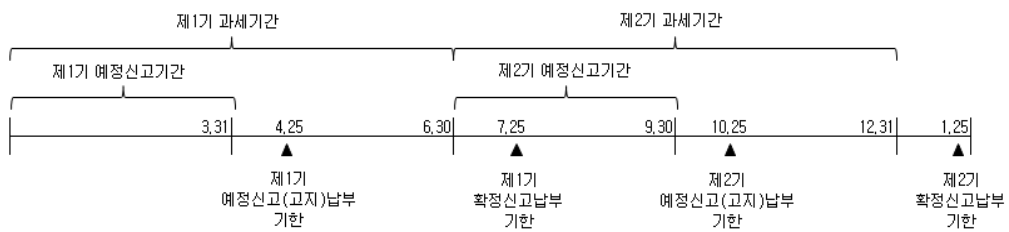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함

- 예정신고한 사업자 또는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 신고한 사업자는 기신고한 과세표준과 기납부한 납부세액을 제외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확정신고·납부해야 함⁸⁾
- 예정신고 시 누락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 대상이나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됨

〈표 II -1〉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개정 연혁

시기	예정신고·납부기간 (법인)	예정고지·납부기간 (개인)	확정신고·납부기간 (법인·개인)
1977~ 1978년	제1기 제1예정신고기간: 1.1~2.28 제2예정신고기간: 3.1~4.30 제2기 제3예정신고기간: 7.1~8.31 제4예정신고기간: 9.1~10.31	없음 (법인과 동일하게 예정신고·납부)	제1기 과세기간: 1.1~6.30 제2기 과세기간: 7.1~6.30
1979~ 1993년			
1994년~ 현재	제1기 예정신고기간: 1.1~3.31 제2기 예정신고기간: 7.1~9.30	제1기 예정신고기간: 1.1~3.31 제2기 예정고지기간: 7.1~9.30	

[그림 II -1]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8)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가. 개관

-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납세의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보고 간이과세자가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특례규정인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직전 연도의 연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분류하며,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산정, 거래징수, 납부세액 계산 등 여러 사항에 대해 특례규정을 적용함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본래 일반과세자와 동일하였으나 간이과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13.1.1 법개정을 통해 과세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 다만, 연 1회 납부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결정세액을 납부하도록 함

나. 예정부과 및 납부

- 1976.12.22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된 이후 영세 개인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과세자에 대한 예정신고(부과)의무가 점차 축소됨
 - 1976.12.22 부가가치세법 제정 당시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과세기간 동안 2회(연 4회)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함
 - 간이과세자는 직전기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세액을 직접 신고·납부함
 - 1978.12.5 법개정으로 예정신고·납부제도를 폐지하고 1과세기간 동안 1회(연 2회) 예정고지·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됨
 - 2003.12.30 법개정 시에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예정고지의무를 폐지함으로써 간이

과세자는 연 2회 확정신고·납부 의무만을 부담하게 됨

- 2013.1.1 과세기간이 1년으로 연장됨과 동시에 신설된 예정부과제도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예정고지·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됨

□ 현행 부가가치세 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 후 연 1회 확정신고 의무만을 부담하나 1회 납부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의 예정부과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⁹⁾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간까지 직접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봄¹⁰⁾
 -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접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예정부과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¹¹⁾의 50%로 결정되며 사업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 후 25일인 7월 25일까지 결정세액을 납부해야 함¹²⁾

-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일반과세자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함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해야 함¹³⁾

9)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1항

10)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2항~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 제2항

11) 직전기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결정 또는 결정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함

12)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1항

1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1항

다. 확정신고 및 납부

-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인 1월 25일 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함¹⁴⁾
 - 간이과세자가 과세기간 중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함
-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차감 하여 산정됨¹⁵⁾

〈표 II -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개정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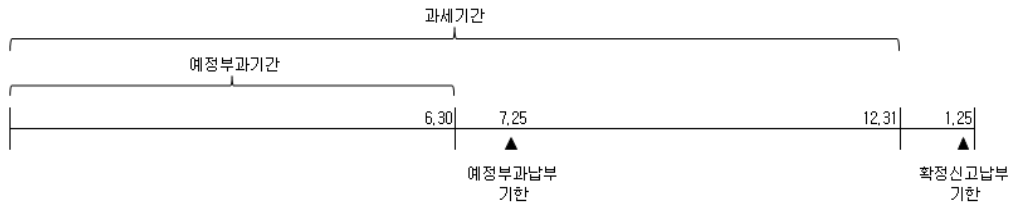
시기	예정신고(부과)기간 ¹⁾	확정신고·납부기간
1977~1978년	제1기 제1예정신고기간: 1.1~2.28 제2예정신고기간: 3.1~4.30 제2기 제3예정신고기간: 7.1~8.31 제4예정신고기간: 9.1~10.31	제1기 과세기간: 1.1~6.30 제2기 과세기간: 7.1~6.30
1979~2003년	제1기 예정부과기간: 1.1~3.31 제2기 예정부과기간: 7.1~9.30	
2004~2012년	없음(예정부과기간에 대한 예정고지·납부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연 2회 확정신고 의무만 부담)	
2013년~현재	예정부과기간: 1.1~6.30	과세기간: 1.1~12.31

주: 1) 1977년부터 1978년까지는 간이과세자(당시 과세특례자)도 예정신고기간(2개월)마다 직전기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세액을 직접 신고·납부하였으나 예정신고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79년부터 예정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직전기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정부가 고지하는 제도로 전환함.

14) 「부가가치세법」 제67조 제1항

15) 「부가가치세법」 제67조 제2항

[그림 II -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3. 부가가치세 사업자별 신고 현황

가. 사업자별 신고 현황

- 2004~2011년의 부가가치세 사업자별 신고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음
- 2004~2011년의 기간 동안 간이과세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아니한 반면 일반과세자, 즉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표 II-3〉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단위: 명, 억원, 백만원)

연도	사업자 구분	1기(1.1~6.30)		2기(7.1~12.31)		합계		신고 세액 비율 ³⁾	1인당 신고세액 [F=E/C]
		신고인원 ¹⁾ [A]	세액 ²⁾ [B]	신고인원 ¹⁾ [C]	세액 ²⁾ [D]	신고인원 ¹⁾ [C]	세액 ²⁾ [E=B+D]		
'07	법인(일반)	382,444	205,820	393,806	229,735	393,806	435,555	75.5%	110.6
	개인(일반)	2,259,667	64,936	2,331,469	71,988	2,331,469	136,924	23.7%	5.9
	간이	1,722,539	2,231	1,759,530	2,285	1,759,530	4,516	0.8%	0.3
	합계	4,364,650	272,987	4,484,805	304,008	4,484,805	576,995	100.0%	-
'08	법인(일반)	412,075	222,597	424,126	245,583	424,126	468,180	75.1%	110.4
	개인(일반)	2,462,592	72,185	2,516,888	78,464	2,516,888	150,648	24.2%	6.0
	간이	1,834,617	2,196	1,838,024	2,126	1,838,024	4,322	0.7%	0.2
	합계	4,709,284	296,978	4,779,038	326,173	4,779,038	623,150	100.0%	-
'09	법인(일반)	434,971	246,860	451,093	252,679	451,093	499,538	76.2%	110.7
	개인(일반)	2,589,560	72,810	2,682,848	79,051	2,682,848	151,860	23.2%	5.7
	간이	1,889,127	1,964	1,863,201	1,953	1,863,201	3,917	0.6%	0.2
	합계	4,913,658	321,634	4,997,142	333,683	4,997,142	655,315	100.0%	-
'10	법인(일반)	455,592	247,086	464,890	251,814	464,890	498,899	74.3%	107.3
	개인(일반)	2,758,007	80,939	2,814,125	88,030	2,814,125	168,969	25.2%	6.0
	간이	1,869,382	1,911	1,827,821	1,909	1,827,821	3,820	0.6%	0.2
	합계	5,082,981	329,936	5,106,836	341,753	5,106,836	671,688	100.0%	-
'11	법인(일반)	475,587	256,537	487,266	276,476	487,266	533,013	73.9%	109.4
	개인(일반)	2,916,524	89,420	2,972,945	95,479	2,972,945	184,898	25.6%	6.2
	간이	1,849,525	1,882	1,762,094	1,852	1,762,094	3,734	0.5%	0.2
	합계	5,241,636	347,839	5,222,305	373,807	5,222,305	721,645	100.0%	-

주: 1) 신고인원은 과세분매출의 신고인원을 의미하며 영세율매출, 면세매출 및 매입세액의 신고인원은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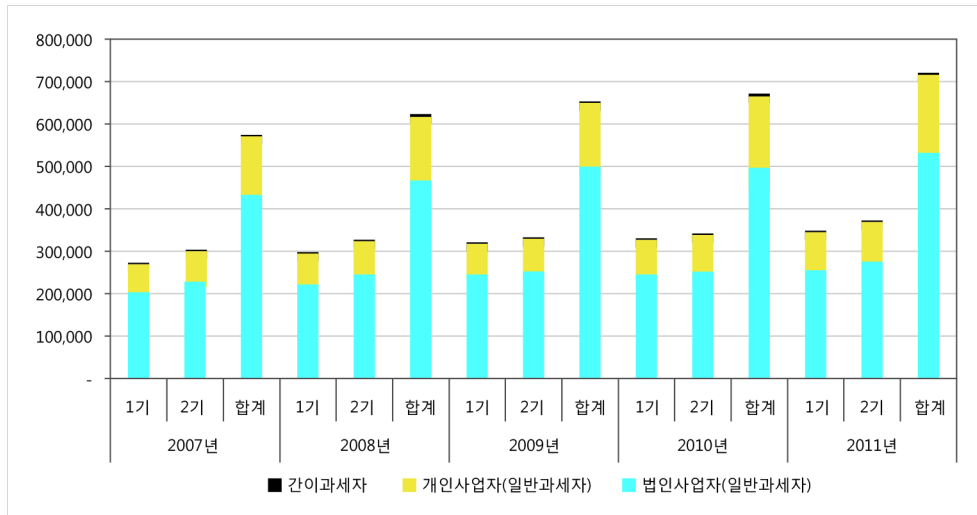
2) 2기의 신고인원을 해당 연도의 신고인원으로 봄

3) 해당 연도 총세액 대비 각 사업자의 세액의 비율임
출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총괄」, 국세청 국세통계

(http://www.nts.go.kr/info/info_03_02.asp?minfoKey=MINF4920080211210012&top_code=&sub_code=&left_code=&ciphertext)

[그림 II-3]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 추이

(단위: 억원)



- 부가가치세 차감납부세액 신고금액의 약 73~76% 가량을 법인사업자가 신고함
 - 간이과세자의 차감납부세액 신고비율은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임

- 2004~2011년의 기간 동안 과세자 유형별 세액비율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된 반면 차감납부세액은 꾸준히 증가함
 - 2004~2011년의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차감납부세액은 연간 2.5~8%씩 증가하였음

- 법인사업자 1인당 차감납부세액 신고금액은 1억~1.1억원 수준으로 가장 높음
 - 개인사업자의 1인당 차감납부세액 신고금액은 500만~600만원 수준이며, 간이과세자의 1인당 차감납부세액 신고금액은 20만~30만원 수준임

나. 사업자 규모별 신고 현황

- 2012년의 부가가치세 사업자 규모별 신고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Ⅱ-4〉 사업자 규모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단위: 명, 억원, 백만원)

사업자 구분 ¹⁾	신고인원		세액			1인당 신고세액 [C=B/A]
	인원 수 ²⁾ [A]	비율 ³⁾	금액 ⁴⁾ [B]	세액신고 비율 ⁵⁾	총세액 대비 신고세액 비율 ⁶⁾	
법인사업자	487,266	100.0%	533,017	100.0%	73.9%	109.4
50백만 미만	194,116	39.8%	4,124	0.8%	0.6%	2.1
50백만 이상	152,872	31.4%	32,763	6.1%	4.5%	21.4
5억 이상	77,341	15.9%	56,660	10.6%	7.9%	73.3
15억 이상	25,720	5.3%	36,947	6.9%	5.1%	143.7
25억 이상	21,547	4.4%	52,983	9.9%	7.3%	245.9
50억 이상	6,733	1.4%	29,117	5.5%	4.0%	432.4
75억 이상	3,085	0.6%	20,015	3.8%	2.8%	648.8
100억 이상	4,325	0.9%	57,328	10.8%	7.9%	1,325.5
250억 이상	940	0.2%	38,356	7.2%	5.3%	4,080.4
500억 이상	587	0.1%	204,724	38.4%	28.4%	34,876.2
일반사업자	2,972,945	100.0%	184,901	100.0%	25.6%	6.2
24백만 미만	1,369,799	46.1%	12,286	6.6%	1.7%	0.9
24백만 이상	534,218	18.0%	16,858	9.1%	2.3%	3.2
48백만 이상	167,163	5.6%	7,434	4.0%	1.0%	4.4
60백만 이상	125,367	4.2%	6,599	3.6%	0.9%	5.3
72백만 이상	185,886	6.3%	12,055	6.5%	1.7%	6.5
1억 이상	280,613	9.4%	28,072	15.2%	3.9%	10.0
2억 이상	210,758	7.1%	42,097	22.8%	5.8%	20.0
5억 이상	65,497	2.2%	26,551	14.4%	3.7%	40.5
10억 이상	24,587	0.8%	16,804	9.1%	2.3%	68.3
20억 이상	9,057	0.3%	16,145	8.7%	2.2%	178.3

〈표 II-4〉의 계속

(단위: 명, 억원,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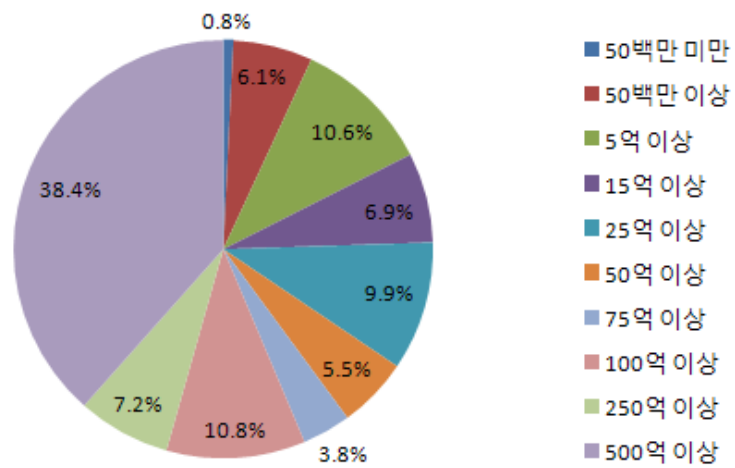
사업자 구분 ¹⁾	신고인원		세액			1인당 신고세액 [C=B/A]
	인원 수 ²⁾ [A]	비율 ³⁾	금액 ⁴⁾ [B]	세액신고 비율 ⁵⁾	총세액 대비 신고세액 비율 ⁶⁾	
간이사업자	1,762,349	100.0%	3,738	100.0%	0.5%	0.2
3백만 미만	573,875	32.6%	208	5.5%	0.0%	0.0
3백만 이상	354,030	20.1%	806	21.6%	0.1%	0.2
6백만 이상	534,833	30.3%	1,974	52.9%	0.3%	0.4
12백만 이상	134,995	7.7%	331	8.9%	0.0%	0.2
18백만 이상	84,367	4.8%	205	5.5%	0.0%	0.2
24백만 이상	58,727	3.3%	115	3.1%	0.0%	0.2
48백만 이상	6,593	0.4%	15	0.4%	0.0%	0.2
60백만 이상	4,003	0.2%	10	0.3%	0.0%	0.2
72백만 이상	10,926	0.6%	74	2.0%	0.0%	0.7
합계	5,222,560	-	721,656	-	100%	-

주: 1) 과세표준 규모에 따른 구분이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분 매출금액임
 2) 신고인원은 과세분매출의 신고인원을 의미하며 영세율매출, 면세매출 및 매입세액의 신고인원은 제외함
 3) 각 사업자의 신고인원 수 대비 해당 규모별 사업자의 신고인원 수의 비율임
 4) 해당 과세기간 또는 해당 연도의 차감납부세액으로서 다음과 같이 산출됨
 차감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가산세액-경감공제세액+차감환급세액
 5) 각 사업자(법인·일반·간이)의 차감납부세액 대비 개별 사업자의 차감납부세액의 비율임
 6) 2012년 총차감납부세액 대비 개별 사업자의 차감납부세액의 비율임
 출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국세청 국세통계
 (http://www.nts.go.kr/info/info_03_02.asp?minfoKey=MINF4920080211210012&top_code=&sub_code=&left_code=&ciphertext)

- 2012년에 신고된 총차감납부세액의 73.9%를 법인사업자가 신고하였으며 법인사업자 차감납부세액의 38.4%를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의 587개 법인이 신고하였음
 -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의 1인당 차감납부세액 신고금액은 348.8억원으로 타 법인사업자의 1인당 신고액보다 현격히 높음
- 또한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신고한 차감납부세액이 2012년 총차감납부세액의 41.6%에 달함

- 이를 통해 총부가가치세 차감납부세액의 상당 부분을 규모가 큰 대기업이 신고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그림 II-4] 법인사업자별 차감납부세액 신고비율



Ⅲ.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 이하에서는 부가가치세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 중 영국, 독일, 호주 및 일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입법례를 살펴보고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을 개정한 바 있는 체코 및 덴마크의 개정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함
 - 우리나라의 신고납부기간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주요국의 신고납부기간 단축 또는 연장사례 및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임
 - 그러나 주요국이라 볼 수 있는 영국, 독일, 호주 및 일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은 대체로 과거 상당기간 동안 별다른 개정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개정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음
 - 따라서 영국, 독일, 호주 및 일본의 경우 현행 신고납부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을 개정한 바 있는 체코와 개정 예정인 덴마크의 개정내용을 별도로 검토함

1. 영국

가. 개관

- 영국은 1973년 1월에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에 가입함에 따라 1973년 4월부터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함
 -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매상세(purchase tax)라는 소비세제를 운영함
- 영국의 현행 부가가치세법(Value Added Tax Act 1994, VATA 1994)에 따르면 직전 12개월의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이 79,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자료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영국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3개월로서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날의 익익월(翌翌月) 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을 1개월로 지정할 수 있음
- 거래규모가 큰 사업자의 경우 중간예납제도(Payments on Account)에 따라 3개월의 과세기간 중 두 번째 달과 세 번째 달의 말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함
- 또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1회만 신고·납부하도록 허용하는 연차회계제도(Annual Accounting Scheme)를 적용함
 - 다만, 연차회계제도를 적용받더라도 선택에 따라 1개월 기준으로 9회 또는 3개월 기준으로 3회 예정고지·납부 의무를 부담함

나. 일반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1) 전자신고

- 2012년 4월 1일부터 영국의 모든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서류신고(paper return)방식 대신 전자신고(online return)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2013년 3월 31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 서류신고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됨
 - 도산 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자 또는 영국 국세청(HMRC)이 승인한 사업자로서 종교상 이유로 전자신고가 불가능한 자의 경우에 한해 전자신고 의무를 면제함

2) 과세기간

- 일반적으로 영국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3개월 단위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일시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납부기간을 다음의 표와 같이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운영함
 - 모든 역월 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발생하므로 신고·납부에 따른 행정력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지 않고 연중 균등하게 소요됨

〈표 Ⅲ-1〉 영국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그룹	과세기간
1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3월 31일
2	7월 31일, 10월 31일, 1월 31일, 4월 30일
3	8월 31일, 11월 30일, 2월 28일, 5월 31일

출처: Notice 700 The VAT Guide, May 2012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고 시 세 그룹 중 한 그룹에 배정되며, 사업자 등록을 요하는 자가 등록하지 않을 경우 그룹1에 강제 배정됨
- 사업연도와의 일치(예: 사업연도가 역월기준이 아닌 경우)를 위해 상기 표에 따른 과세기간 이외의 과세기간을 선택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기관(National Registration Service)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함으로써 과세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납부세액 대신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을 1개월로 하여 연 12회 신고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나 선택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과세기간을 1개월로 지정할 수 없음
 - 과세기간을 1개월로 지정한 사업자가 환급세액 대신 납부세액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경우 과세기간을 3개월로 변경해야 함

3) 신고납부기한

-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날의 익익월 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서류신고방식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날의 익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함

〈표 Ⅲ-2〉 영국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그룹	과세기간 종료일	신고납부기한	
		전자신고·납부	서류신고·납부 ¹⁾
1	6월 30일	8월 7일	7월 31일
	9월 30일	11월 7일	10월 31일
	12월 31일	2월 7일	1월 31일
	3월 31일	5월 7일	4월 30일
2	7월 31일	9월 7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7일	11월 30일
	1월 31일	3월 7일	2월 28일
	4월 30일	6월 7일	5월 31일
3	8월 31일	10월 7일	9월 30일
	11월 30일	1월 7일	12월 31일
	2월 28일	4월 7일	3월 31일
	5월 31일	7월 7일	6월 30일

주: 1) 2012년 4월 1일부터는 부득이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일부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납부해야 함

- 다음에 설명될 중간예납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와 연차회계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별도의 신고·납부기한이 적용됨
- 중간예납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날의 익월 말일까지
- 연차회계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날의 익익월 말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4) 중간예납제도(Payments on Account)

- 부가가치세의 조기징수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제도를 적용함
- 중간예납제도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3개월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적용하고 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230만파운드 이상인 자임
- 중간예납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3개월의 과세기간 중 두 번째 달과 세 번째 달의 마지막 근무일(working day)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함
 -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종료 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총납부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납부함
- 중간예납세액은 납부세액이 230만파운드를 초과한 시점으로부터 과거 1억원 동안의 납부세액을 24로 나누어 산정되며, 과세당국이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함
 - 과거 1억원 동안의 납부세액에는 수입재화 및 창고인도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함
 -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영위기간의 비율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
- 사업자의 연간 총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중간예납세액 계산 기준이 되는 납부세액의 80% 미만으로 감소하거나 20%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은 증감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
- 중간예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연도의 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230만파운드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6개월 후 중간예납제도 적용을 중단할 수 있음
 - 기준연도 이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180만파운드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도 중간예납제도 적용을 중단할 수 있음

- 중간예납제도를 적용해야 하는 사업자는 중간예납제도를 적용하는 대신 다음의 방법을 취할 수 있음
 - ① 과세기간을 1개월로 지정(monthly returns): 매달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함
 - ② 매달 실제 납부세액을 납부(actual monthly liability): 매달 실제 발생한 납부세액만을 납부하나 신고할 필요는 없음

다. 연차회계제도(Annual Accounting Scheme)

- 영국은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납부에 대한 특례제도로써 연차회계제도를 1998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단일 특례제도인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간이과세자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 거래징수, 납부세액 계산 등 여러 사항에 대한 특례를 동시에 제공함
 - 반면 영국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여러 특례제도를 개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가 특례제도를 개별적으로 또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¹⁶⁾
- 연차회계제도란 신고·납부로 인한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 1회만 신고·납부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써, 연차회계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선택에 따라 연 9회 또는 연 3회 중간예납(instalment)을 해야 함
- 연차회계제도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16) 영국이 운영하고 소규모 사업자 특례제도는 다음과 같음(박명호·기은선·정경화(2009), pp. 23~41)

- 등록의무 면제: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 사업자등록의무를 면제
- 단일세율제도(flat rate scheme): 특정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 현금주의회계제도(cash accounting): 거래의 발생시점이 아니라 현금의 수취·지급시점에 기초해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 연차회계제도(annual accounting):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허용하는 방법

〈표 Ⅲ-3〉 영국 연차회계제도의 장단점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에 4번이 아니라 1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됨 •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됨(일반적인 경우 1개월+7일) • 매월 또는 분기별로 예납해야 할 금액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흐름 관리가 용이함 • 사업자가 원할 경우 고지금액보다 많은 부가가치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 또한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환급을 1년에 한 번밖에 받지 못함 •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연차회계제도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표준적인 부가가치세제에 따른 납부세액보다 큼 • 납부기한 연장이 불가능함

출처: 박명호·기은선·정경화(2009), p. 38

1) 적용대상

- 연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taxable supply)이 135만파운드 이하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연차회계제도를 적용할 수 있음
 - 판단기준이 되는 공급가액은 표준세율, 경감세율 및 영세율 공급가액을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액, 면세 공급가액, 자본자산의 매각금액을 제외함

- 연차회계제도를 적용받기 시작한 사업자는 연간 공급가액이 160만파운드를 초과하기 전까지 계속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음
 - 연차회계제도를 적용받기 시작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매년 자동으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사업자는 연차회계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기업 내 그룹(group) 또는 부서(division)로서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직전 12개월 이내에 연차회계제도의 적용을 중단한 자
 - 부가가치세 미납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자
 -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자

2) 중간예납

- 연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발생할 납세자의 금전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연차회계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대해 중간예납제도를 두고 있음
- 통상적으로 연차회계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직전 연도 연간 부가가치세액의 10%를 1달 단위로 총 9회에 걸쳐 중간예납해야 함(월별 납부)
- 월별 납부가 사업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는 3개월 단위로 중간예납을 신청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전 연도 연간 부가가치세액의 25%를 3개월 단위로 총 3회에 걸쳐 중간예납해야 함(분기별 납부)
- 예납세액과 납부기한은 국세청이 고지함

3) 신고납부

- 연차회계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과세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익월 말일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과세기간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함

〈표 Ⅲ-4〉 영국 연차회계제도의 납부기한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1)	14(2)
월별 납부				1 번째	2 번째	3 번째	4 번째	5 번째	6 번째	7 번째	8 번째	9 번째		최종 납부
분기별 납부				1 번째			2 번째			3 번째				최종 납부

출처: Notice 732 Annual accounting, June 2010

라. 요약

- 영국의 일반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및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Ⅲ-5〉 영국의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요약

	일반 사업자 ¹⁾		소규모 사업자
	중간예납 대상 사업자	기타 일반 사업자	
대상요건	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230만파운드 이상인 자	-	연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135만파운드 이하로 예상되는 자
과세기간 (연간 신고횟수)	3개월(4회)	3개월(4회)	1년(1회)
과세기간 내 중간예납 (연간 중간예납횟수)	과세기간의 두 번째, 세 번째 달 말일까지 2회(8회)	없음	①과 ② 중 선택 ① 1개월 단위로 9회 예납(9회) ② 3개월 단위로 3회 예납(3회)
신고납부기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말일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7일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말일

주: 1) 일반 사업자 중 과세기간을 1개월로 지정한 사업자는 매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납부기한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7일임. 또한 중간예납 사업자는 매달 실제 납부세액을 납부(actual monthly liability)함으로써 중간예납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영국은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신고의무는 3개월에서 1년, 납부의무(중간예납 포함)는 1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차등부여하고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사업자는 3개월의 과세기간 중 1개월 단위로 2회 중간예납을 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매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짐
 -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일반 사업자는 3개월마다 1번씩 연간 총 4회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함
 - 소규모 사업자는 연차회계제도를 적용받아 연 1회만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9회 또는 3회 중간예납의무를 부담함

2. 독일

가. 개관

- 1967년 EU 부가가치세 지침(EU VAT Directive 67/227/EEC of 11 April 1967)이 제정됨에 따라 독일은 이를 바탕으로 1968.1.1부터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함
- 독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Umsatzsteuergesetz)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의무를 면제받는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직전 12개월의 매출(면세거래 제외)이 17,500유로를 초과하지 않고 당해 연도의 매출이 50,000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음
- 독일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년으로서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또한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예정신고제도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함
 -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예정신고의무가 면제됨

나. 신고납부제도 운영 현황

1)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 독일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역년이므로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연 1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함
 - 사업 개시일로부터 연도말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과세기

간으로 함

- 예정신고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Umsatzsteuererklärung)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함
 -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2010.12.31 이후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 모든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자신고 방식을 이용해야 하나 적법하게 서명된 전자신고서 출력물을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음

2) 예정신고제도

- 독일의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예정신고제도(preliminary VAT returns)에 따라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의무를 부담하며 사업자의 납세이행능력을 고려하여 거래규모에 따라 상이한 예정신고기간을 적용함

- 사업자는 통상적으로 3개월마다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함
 - 3개월마다 예정세액을 스스로 산출하여 소정의 예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함

-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매월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함
 - ① 직전 과세연도의 납부세액이 7,500유로를 초과하는 사업자
 - ② 직전 과세연도의 환급세액이 7,500유로를 초과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수령할 요건을 갖춘 자
 - ③ 신규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최초 과세연도 및 그 다음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사업자

- 직전 과세연도의 부가가치세액이 1,000유로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신청에 의해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예정신고는 전자신고로만 가능하며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고하고 산출세액을 납부해야 함
 - 사업여건상 전자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과세당국에 신청을 통해 전자신고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사업자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납부기한을 1달 연장 가능함
 - 다만, 매월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부가가치세액의 1/11을 선납(special prepayment)해야 함
 - 선납한 세액은 마지막 예정신고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다. 요약

- 독일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Ⅲ-6〉 독일의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요약

구분	대규모 사업자	일반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
대상요건	직전 과세연도의 납부(환급)세액이 7,500유로를 초과하는 사업자 또는 일부 신규사업자 ¹⁾	대규모 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사업자	직전 과세연도의 납부세액이 1,000유로 미만인 사업자
과세기간	1년	1년	1년
예정신고기간	1개월	3개월	없음
예정신고 납부기한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10일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10일	해당사항 없음
확정신고 납부기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해 5월 31일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해 5월 31일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해 5월 31일

주: 1) 사업을 개시한 최초 과세연도 및 그 다음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신규사업자

- 독일의 모든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1년으로 동일하나 사업자 규모에 따라 예정신고의무를 차등부여하고 있음
 -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제도를 면제받아 연 1회만 신고·납부할 수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자는 매월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함
 - 기타 일반 사업자는 분기별로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함

3. 호주

가. 개관

-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호주의 물품용역소비세(Goods and Services Tax, 이하 GST)는 최종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간접소비세이며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음
 -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분배단계에서 과세됨
 - 과세대상 거래에서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 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조정세액(GST adjustments)을 가감하여 최종 납부할 GST 세액을 산출함
 - 조정세액이란 GST의 수정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납부할 GST 세액을 직접 조정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공급 자체의 취소, 공급가액의 변동, 대손금 발생, 면세비율 증감에 따른 매입세액 재조정 등이 있음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 단위로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임
 - 연 매출액(turnover) 기준 7만 5천호주달러(비영리단체인 경우 15만호주달러)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이 임계점 이하라 하더라도 매입세액 환급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임의로 등록할 수 있음
 - 2007년 7월 1일 이전의 임계점은 5만호주달러(비영리단체는 10만호주달러였음)

- 임계점 초과 여부에 대한 검토는 1개월 단위로 이루어져야 함
 - ‘기업활동’을 하는 자(carrying on an enterprise)만이 등록을 할 수 있는바, 여기서 ‘기업활동’이라 함은 사업(business), 직업, 소명, 전문적 행위 등의 형태로 영리추구 유무와 관계없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함¹⁷⁾
 - 90% 이상의 지분을 갖는 자회사들을 거느린 기업집단에서는 GST 신고납부 책임이 있는 집단 내 기업을 지정할 수 있음
 - 지점도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지점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
- GST는 발생주의 기준 또는 현금주의 기준을 적용하여 납부할 수 있음¹⁸⁾
- 현금주의 기준은 연간 매출 100만호주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선택 적용가능함
 - 발생주의 기준하의 과세거래 귀속시기는 실제로 현금을 수수한 날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날 중 빠른 날이며, 현금주의 기준하의 과세거래 귀속시기는 현금을 수수한 날임
- 과세되는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GST를 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정노트(adjustments notes)를 발행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는 과세대상의 공급 후 공급받는 자의 요청일로부터 28일 내에 발행되어야 함
 -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거나 공급대가의 결정권이 공급받는 자에게 있는 등 특수한 상황하에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단위이나 일정 매출규모 이하 사업자에게는 보다 긴 과세기간 적용 선택이 가능하며, 예정고지납부제도를 선택할 수 있음
- 연 매출규모 2천만호주달러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분기(3개월) 단위의 과세기간 선택 가능함

17) GST Acts 9-20

18) GST Acts 29-5

- 연 매출규모 7만 5천호주달러 미만의 사업자는 1년 단위의 과세기간 선택도 가능함
- 연 매출규모 200만호주달러 미만 사업자는 실 계산에 의한 GST 납부 대신 예정고지 납부제도를 선택할 수 있음

나. 신고납부제도 운영 현황

1) 과세기간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등록 사업자 또는 사업자 등록 대상자는 호주국세청 (ATO)에 GST를 서면신고 또는 전자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할 책임이 있음
- GST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매 1개월로 하되, 매출규모 차이에 따른 사업자별로 3개월 또는 1년 단위의 신고납부도 가능하게 함
 - 법이 시행된 2000년 7월 1일 이래 연 매출규모 2천만호주달러 이상인 사업자는 예외 없이 매 1개월마다 신고납부하도록 함
 - 이 때는 필수적으로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함
 - 연 매출규모 2천만호주달러 미만이면서 국세청으로부터 불성실 납세자 등을 이유로 매월 신고납부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는 3개월(분기)마다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 이 중 임계점(연 매출 7만 5천호주달러, 단 비영리단체인 경우 15만호주달러) 미만의 임의등록 사업자에게는 행정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연 1회 신고납부를 허용함

〈표 Ⅲ-7〉 호주의 사업자 매출규모별 GST 신고납부기간

신고기간	GST 매출액		
	75,000호주달러 미만인 사업자 ¹⁾	78,000호주달러 이상~2천만호주달러 미만	2천만호주달러 이상
1개월	가능	가능	필수
3개월	가능	가능	불가능
1년	가능	불가능	불가능

주: 1) 비영리단체의 경우 GST 매출액 15만호주달러 미만인 사업자

2) 신고납부 기한

- 신고납부기한은 각각의 과세기간을 적용받는 사업자별로 차이가 있음
 - 매 1개월마다 신고납부하는 하는 사업자는 당해 월의 말일로부터 21일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 즉, 매월 21일이 직전월에 대한 GST 신고납부기한임
 - 매 3개월마다 신고납부하는 사업자는 당해 분기 말의 말일로부터 28일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 즉, 4월 28일, 7월 28일, 10월 28일, 1월 28일이 각 신고납부기한이 됨
 - 매 1년마다 신고납부하는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에 맞추어 신고납부하면 되며,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는 사업자는 2월 28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됨
 - 소득세는 통상적으로 직전 연도 7월 1일부터 당해 연도 6월 30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함

3)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예정고지납부 등

- 매 분기별 신고납부를 선택한 사업자는 3개월간의 실적을 실제 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출규모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업자는 분기마다 예정고지에 의한 납부를 하고 나중에 연도별로 세액을 실제 산출하여 확정 신고할 수 있음

- 3개월간의 실적에는 판매 및 구매단계에서의 GST, 총매출액, 수출액, 면세대상 금액, 고정자산 구매액 등이 있음
 - 예정고지에 의한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연 매출액이 200만호주달러 미만의 소규모 법인 및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
 - 기업활동보고서(Business Activity Statement: BAS)를 매월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경우
 - 최소 2분기 이상 BAS를 제출한 경우
 - 과거 BAS를 빠짐없이 제출하였고 기준에 부합한 경우
 - 직전 연도 연간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매출세액보다 크지 않은 경우
 - 실제 GST와 예정고지납부세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연말 확정신고 시 정산이 이루어짐
- 또한 예정고지납부 방법의 선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음
- 일단 예정고지납부 제도를 선택하면 원칙적으로 다음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는 이를 계속 적용해야 함
 - 만일 예정고지납부세액 총액이 당해 연도에 납부해야 할 실제 GST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면 납세자가 예정고지납부 세액을 변경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나, 변경 후 납부하는 금액이 실제 GST의 85% 수준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됨
 - 직전 연도 실적에 기초하여 예정고지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자가 사업 개시 시점부터 바로 예정고지납부 제도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함
 - 신규사업자의 경우 2분기 이상 BAS를 제출하고 두 번째 분기에 국세청에 GST를 납부하기 전까지는 동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함
- 한편 사업자가 환급을 신청할 경우 호주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4일 내에 환급을 해주어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환급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해야 함

다. 요약

□ 호주의 GST 신고납부제도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Ⅲ-8〉 호주의 사업자별 GST 신고납부제도 요약

구분	대규모 사업자	일반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 및 임의등록 사업자
대상요건	연 매출규모 2천만 호주달러 이상인 사업자	연 매출규모 7만 5천호주달러 이상 2천만 호주달러 미만인 사업자	연 매출규모 7만 5천호주달러 미만의 임의등록 사업자 ¹⁾
과세기간	1개월	1개월, 3개월	1개월, 3개월, 1년
예정신고의무	없음	없음	없음
예정고지납부 방식 선택	해당사항 없음	3개월 단위 과세기간 선택자 중 연 매출액 2백만 호주달러 미만 사업자	3개월 단위 과세기간 선택자
신고납부기한	1개월 단위 과세기간 적용 사업자: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1일 내 3개월 단위 과세기간 적용 사업자: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8일 내 1년 단위 과세기간 적용 사업자: 통상 소득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주: 1) 비영리단체의 경우 GST 매출액 15만호주달러 미만인 사업자

- 호주에서는 매 1개월 단위의 과세기간 적용을 원칙으로 하나, 소규모 사업자 및 임의등록 사업자에게는 3개월 및 1년 단위의 과세기간 선택도 가능하게 함
- 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각 과세기간별 실제계산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함
 - 다만, 3개월 단위 과세기간 선택자 중 연 매출규모 200만호주달러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자는 3개월 단위의 예정고지납부 및 연 단위의 정산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음

4. 일본

가. 개관

- 일본은 1988년 12월 세계개혁에서 일반 소비세를 창설하였고, 1989년 4월 1일부터 3%의 세율로 부과하기 시작했음
 - 1988년까지 일본은 상품이나 제품 일반에 대한 소비세를 도입하고 있지 않았으며, 소비과세는 개별 상품에 대한 물품세, 입장세 등으로 부과되고 있었음
 - 일본의 소비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되는 개념임
 - 물품세, 입장세 등을 정리·합리화한다는 관점에서 국세 5개 세목, 지방세 3개 세목 합계 8개 세목을 폐지하고 일반 소비세를 실시한 것임

- 소비세율은 법 제정 당시 3%에서 1997년 4월 1일 이후 5%(국세소비세 4%, 지방소비세 1%) 수준으로 개정되었으며 이 세율은 2013년 현재까지 유효함
 - 그러나 2012년 세계개혁조치로 2014년부터 세율 인상이 예정되어 있음
 - － 2014년 4월 1일부터는 8%(국세소비세 6.3%, 지방소비세 1.7%)
 - － 2015년 10월 1일부터는 10%(국세소비세 7.8%, 지방소비세 2.2%)

- 일본은 세금계산서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장부상 과세매출과 과세매입을 근거로 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함

- 일본은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사무의 부담을 고려하여 과세기간의 과세매출액이 1천만 엔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소비세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음¹⁹⁾
 - 납부면제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 또한 면제되나, 자발적인 등록은 가능함

19) 「소비세법」 제9조 제1항

- 또한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자의 사무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과세기간의 과세매출액이 5천만엔 이하인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제도를 선택하여 과세매출액에 기초한 간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2004년 4월 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기준점은 2억엔이었음
 -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매입 등의 사실을 기록한 장부나 과세매입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청구서 등을 보존할 필요가 없음

- 소비세의 과세기간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1역년, 법인사업자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소비세 조기환급 등을 목적으로 분기(3개월) 또는 1개월 단위의 과세기간 선택도 가능함

- 일본은 소비세 중간신고납부제도를 두고 있는데, 직전 과세기간의 소비세 납부수준에 따라 매월, 3개월, 6개월 단위의 예비신고납부를 하여야 함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가 그 대상임
 - 직전 기간 소비세 납부액이 48만~400만엔일 경우 6개월마다, 400만~4,800만엔일 경우 3개월마다, 4,800만엔을 초과하면 1개월마다 소비세를 중간신고납부해야 함

나. 신고납부제도 운영 현황²⁰⁾

1) 과세기간

- 소비세는 과세기간별로 신고·납부되며 과세기간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²¹⁾

20) 소비세 중 국세 부분과 지방세 부분 모두 과세기간, 신고납부 기한, 중간신고납부 등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됨

21) 「소비세법」 제19조

-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역년임
 - 만일 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 법인사업자의 과세기간은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임
 - 그러나 만일 사업연도 기간 중 정부회계연도 종료일인 3월 31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4월 1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또 다른 과세기간으로 간주함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분기(3개월) 또는 1개월 단위의 단축된 특례 과세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함
- 관할세무서장에게 고지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며, 이는 정기적으로 소비세액을 환급 받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유용함
 - 개인사업자의 특례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연도가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만 적용가능하며, 특례 과세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 단위이며 마지막 과세기간은 3개월 이내여야 함
 - 단축 특례를 선택한 사업자는 사업을 폐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택 후 2년간 특례를 계속 적용해야 함
- 한편 과세화물을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수할 때 부과되는 소비세의 경우 화물을 인수할 때마다 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별도의 과세기간이 없음
- 만일 관세법에서 허용하는 자가납부 방식을 선택한 수입자는 수입소비세 납부에 대한 3개월간의 기한연장을 부여받을 수 있음
 - 다만 세금이연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담보가 제공되어야 함

2) 확정신고납부 기한

- 국내거래의 경우 사업자(면제사업자는 제외)는 과세기간마다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이때 확정신고서에는 과세기간 중 자산양도 등의 대가금액 및 과세매입 등 세액의 명세, 기타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 그러나 과세자산의 양도가 없고 매입에 관련된 소비세액의 공제액이 없으면 확정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소비세의 신고 및 납부는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다만, 개인사업자에 있어 그 해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관련된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임
 - 즉, 일반적인 과세기간을 적용받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비세 신고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사업연도가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인 법인인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개인사업자가 과세기간 도중에 또는 과세기간의 말일 후에 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를 안 다음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또한 청산이 진행 중인 법인의 잔여재산이 확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잔여재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소비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함

3) 중간신고납부²²⁾

-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세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관련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중간신고납부제도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나, 합병의 경우를 제외

22) 「소비세법」 제42조

하고는 첫 개시 사업연도에는 요구되지 않음

- 또한, 면세사업자, 특례 과세기간을 선택하고 있는 사업자, 3개월 이하의 사업연도를 취하는 법인사업자는 중간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함

□ 일본의 중간신고납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 소비세액(연 환산 세액을 말함) 수준에 따라 4가지 유형이 있음

- 직전 과세기간의 소비세액이 48만엔 이하인 경우는 중간신고납부의무 없음
- 직전 과세기간의 소비세액이 48만엔 초과 400만엔 이하인 경우는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소비세액을 중간신고납부하여야 함
- 직전 과세기간의 소비세액이 400만엔 초과 4,800만엔 이하인 경우는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날 이후 3개월, 6개월 및 9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소비세액을 각각 중간신고납부하여야 함
- 직전 과세기간의 소비세액이 4,8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후 매 1개월마다 각 기간의 말일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전 과세기간의 소비세액의 12분의 1에 상당하는 소비세액을 중간신고납부하여야 함

□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고지된 세액 대신 당해 기간에 실제 계산한 소비세액을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다. 요약

□ 일본의 소비세 신고납부제도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Ⅲ-9〉 일본의 사업자별 소비세 신고납부제도 요약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과세기간	1역년	사업연도
확정 신고납부 기한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내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내
특례 과세기간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과세기간 선택적용 가능하나, 한번 적용하면 2년간 계속 적용하여야 함	
중간신고납부제도	<직전 과세기간의 소비세 납부세액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48만엔 이하: 중간신고납부 의무 없음 48만엔 초과 400만엔 이하: 매 6개월 단위 400만엔 초과 4,800만엔 이하: 매 3개월 단위 4,800만엔 초과: 매 1개월 단위	
중간신고납부기한	중간신고납부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내	

- 일본에서는 개인사업자는 1역년,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기준 과세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비세 납부실적에 따라 차등화한 중간신고납부 의무를 지우고 있음
 - 소비세 조기환급 등을 위해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의 과세기간 선택도 가능하나, 2년간 지속 적용하여야 함
 - 중간신고납부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직전 과세기간의 소비세 납부규모에 따라 신고납부 단위가 달라짐
 - 납부세액이 48만엔 이하이면 의무가 면제되며, 48만엔 초과 400만엔 이하이면 매 6개월 단위, 400만엔 초과 4,800만엔 이하이면 매 3개월 단위, 4,800만엔 초과 이면 매 1개월 단위로 중간신고납부하여야 함

5. 체코·덴마크의 신고납부제도 개정내용

가. 체코

- 2012년 이전까지 체코 거주자인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직전 과세연도의 공급가액이 200만코루나(Koruna) 미만인 사업자는 3개월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음
 - 직전 과세연도의 공급가액이 1천만코루나 이상인 사업자는 매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직전 과세연도의 공급가액이 200만코루나 이상 1천만코루나 미만인 사업자는 월별 신고·납부와 분기별 신고·납부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선택이 없는 경우 분기별 신고·납부가 자동 적용됨
 - 부가가치세 그룹(VAT group)은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1개월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비거주자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거래규모와 관계없이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허용됨

- 2013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코의 모든 부가가치세 사업자(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월별 신고·납부가 적용되며 일부 사업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분기별 신고·납부가 허용됨
 - 거주자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비거주자인 사업자도 매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다만 2012년도의 공급가액이 1천만코루나 이하인 비거주자 사업자에 한하여 분기별 신고·납부가 허용됨

〈표 Ⅲ-10〉 체코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개정내용

사업자 구분		신고납부기간	
거주여부	직전 과세연도 공급가액	2012년 이전	2013년 이후
거주자 사업자	2백만코루나 미만	3개월	1개월
	2백만 이상 10백만코루나 미만	1개월, 3개월 중 선택 ¹⁾	
	10백만코루나 이상	1개월	
	부가가치세 그룹	1개월	
비거주자 사업자	10백만코루나 미만	3개월 (직전 과세연도 공급가액 무관)	3개월
	10백만코루나 이상		

주: 1) 납세자의 선택이 없는 경우 3개월의 신고납부기간이 적용됨

나. 덴마크

- 현행 덴마크 부가가치세법(Bekendtgørelse af merværdiafgiftsloven)상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규모에 따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연간 공급가액이 100만크로네(krone) 미만인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6개월이며 과세기간 종료 후 3번째 달 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연간 공급가액이 1,500만크로네 이상인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1개월이며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다만, 6월분은 과세당국이 지정한 날짜(8월 10일경)까지 신고·납부해야 함
 - 연간 공급가액이 100만크로네 이상 1,500만크로네 미만인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3개월이며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선택에 의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연도의 공급가액이 2천만크로네를 초과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분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 덴마크는 2014년부터 사업자의 신고납부기간 및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추진 중임
 - 연간 공급가액이 500만크로네 미만인 사업자의 과세기간을 6개월로 하고 신고납부기한을 60일로 연장할 예정임
 - 연간 공급가액이 500만크로네 이상 1,500만크로네 미만인 사업자의 신고납부기한을 60일로 연장할 예정임
 - 연간 공급가액이 1,500만크로네 이상 5천만크로네 미만인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3개월로 하고 신고납부기한을 60일로 연장할 예정임

〈표 Ⅲ-11〉 덴마크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개정내용

(단위: 만크로네)

2013년 이전		연간 공급가액	2014년 이후	
신고납부기간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기간	신고납부기한
6개월	60일	0~100	6개월	60일
3개월	40일	100~500 ¹⁾		
		500~1,500 ²⁾	3개월	60일
1개월	25일	1,500~5,000 ³⁾		
		5,000~	1개월	25일

주: 1) 1백만크로네 이상 5백만크로네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신고납부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신고납부기한도 40일에서 60일로 연장될 예정임
 2) 5백만크로네 이상 15백만크로네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신고납부기한이 40일에서 60일로 연장될 예정임
 3) 15백만크로네 이상 50백만크로네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신고납부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고 신고납부기한도 25일에서 60일로 연장될 예정임

다. 소결

- 체코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1개월로 단축한 반면, 덴마크는 신고납부기간 및 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의 제도 개정을 앞두고 있음
- 체코와 덴마크의 신고납부제도가 개정된 사유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 없으나, 체코는

부가가치세의 조기징수를 위해, 덴마크는 납세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신고납부제도를 개정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신고납부제도는 각 국가의 조세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되고 운영되는 사항으로서 국제적으로 신고납부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등의 추세가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가. 사업자의 구분

- 우리나라의 신고납부제도는 사업자의 종류(일반 법인사업자, 일반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별로 상이한 신고납부기간을 적용함
 - 일반과세자 중 법인(개인)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 후 3개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고지)·납부하고 6개월에 대해 확정신고·납부함
 -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 개시 후 6개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예정고지·납부하고 1년에 대해 확정신고·납부함

- 반면, 주요국의 경우 사업자의 종류가 아닌 사업자의 규모(공급대가, 매출액, 납부세액 등)별로 상이한 신고납부기간을 적용함
 - 영국은 연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기간 및 예정신고납부기간을 차등적용함
 - 독일은 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상이한 예정신고납부기간을 적용함
 - 호주는 사업자의 매출액 규모별로 신고납부기간 선택적용 및 신고납부/고지납부 방법이 달라짐
 - 일본은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중간신고납부기간이 달라짐

나.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 주요국은 대규모 사업자, 일반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의 세수규모의 중요성 및 납세이

행능력을 고려하여 각 사업자에 대해 상이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적용함

- 영국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며 소규모 사업자에 한하여 과세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는 연차회계제도의 적용을 허용함
- 독일의 과세기간은 사업자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1년이나 사업자별로 상이한 예정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함
- 호주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나 일정 매출액 규모 이하 사업자는 3개월 또는 1년 단위의 과세기간 선택이 가능함
- 일본의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임
 - 개인사업자의 경우 1역년,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함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각국의 행정체계를 바탕으로 결정되므로 국가별 공통점을 찾기 어려웠으나 대체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인 25일보다는 장기임
 - 영국의 신고납부기한은 사업자별로 상이하나 대체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2개월임
 - 독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호주의 신고납부기한은 매 1개월 단위 신고납부 시 익월 21일까지로서 우리나라보다 짧은 반면, 3개월 단위 신고납부 시 28일, 1년 단위 신고납부 시 4개월로써 차등을 두고 있음
 - 일본의 신고납부기한은 대체로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2~3개월임

다. 예정신고(고지)제도/중간예납제도/중간신고제도

- 대다수의 국가가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또는 고지·납부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를 표현하는 용어가 각기 다름
 - 우리나라는 '확정력이 없는 신고'라는 의미에서 예정신고(고지)제도로 표현함
 - 영국은 중간예납제도(payment on account)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과세관청이 직전 과세연도 세액의 24분의 1을 고지하는 방식이므로 사실상 우리나라의 예정고지제도

와 유사함

- 연차회계제도를 적용받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월별 또는 분기별 중간예납 (instalment)을 해야 하는데 이 또한 예정고지제도와 유사함
 - 독일은 대규모 사업자에 한해 예정신고제도(preliminary VAT returns)를 두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가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서 우리나라의 예정신고제도와 유사함
 - 호주는 매 3개월 단위의 과세기간 선택자 중 연 매출액 규모 200만호주달러 미만인 사업자는 예정고지(instalment payment notice)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예정고지제도와 유사함
 - 일본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중간(中間)신고납부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직전 과세기간 최종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예정고지납부하는 방식과 실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가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
- 주요국은 대체로 예정신고(고지)/중간예납/중간신고제도를 이용하여 대규모 사업자에 대하여 1개월의 짧은 신고납부기간을 적용하고 중간규모의 일반 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고지)등을 면제하거나 3개월의 신고납부기간을 적용함
- 영국은 대규모 사업자에 한해 1개월의 중간예납기간을 적용함
 - 독일은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 1개월, 중간규모의 일반 사업자에 대해 3개월의 예정신고기간을 적용하며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의무를 면제함
 - 호주는 원칙적으로 1개월 단위의 과세기간을 적용하되, 3개월 단위 과세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 중 더욱 영세한(연 매출액 200만호주달러 미만) 사업자에게 예정고지·납부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며 임의등록 사업자에게는 예정신고/고지납부 의무를 면제함
 - 일본은 직전 과세기간 소비세액 수준에 따라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의 중간신고 납부기간을 적용함

〈표 IV-1〉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비교

국가	사업자 구분	요건	확정신고		예정신고(고지)제도/중간예납제도/중간신고제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한	제도유무	신고납부기간	신고납부기한
한국	일반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법인·개인 사업자 연 공급대가 4,800만원 이하	6개월	과세기간 종료일~25일	○(예정신고)	3개월	예정신고납부기간 종료일~25일
	과세자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3개월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6개월	
영국	대규모 사업자	연 납부세액 230만파운드 이상	3개월 ¹⁾	과세기간 종료일~1개월	○(중간예납)	1개월	중간예납기간 종료일~1개월
	일반 사업자				×	-	
	소규모 사업자				○(중간예납)	1개월/3개월 선택	
독일	대규모 사업자	연 납부(환급)세액 7,500유로 초과 및 일부 신규사업자	1년	과세기간 종료일~다음 해 5월 31일	○(예정신고)	1개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10일
	일반 사업자				○(예정신고)	3개월	
	소규모 사업자				×	-	
호주	일반 사업자	연 매출액 2천만호주달러 초과	1개월	과세기간 종료일~21일	×	-	
	소규모 사업자				1개월/3개월 선택	과세기간 종료일~28일	
	임의등록 사업자				1개월/3개월/1년 선택		
일본	대규모 사업자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 4,800만엔 초과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 400만~4,800만엔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 48만~400만엔	1역년(개인)/ 사업연도(법인) ³⁾	과세기간 종료일~3개월(개인)/ 2개월(법인)	○(중간신고)	1개월 3개월 6개월	중간신고납부기간 종료일~2개월
	일반 사업자				×		
	소규모 사업자				×		

주: 1) 일부 사업자는 과세기간을 1개월로 지정할 수 있음
 2) 3개월 단위 과세기간을 적용받는 사업자 중 연 매출액 2백만호주달러 미만 사업자는 3개월 단위의 예정고지납부 후 1년간의 세액을 실체지로 정산할 수 있음
 3) 선택에 따라 과세기간을 매 1개월 또는 3개월로 단축할 수 있음

2. 시사점

가.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및 신고납부기간의 세분화

-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적용에 있어서 공급대가 수준뿐만 아니라 법인인지 아니면 개인인지 여부에 대한 구분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주요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적인 기준은 아님
 -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만 일반 사업자와는 다른 신고납부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 여기서 신고납부기간이란 확정신고기간(과세기간)뿐만 아니라 예정신고(고지)기간도 포함하는 것임
 - 신고납부기간 결정에 있어서, 영국은 공급대가 및 납부세액 규모, 독일과 일본은 납부세액, 호주는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하며 법인/개인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우리나라의 법인/개인 구분 기준은 개인의 기장능력 및 행정부담 완화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신고납부기간 결정에 있어 절대적 기준으로 보기는 어려움
 - 세수 확보 가능성과 납세자의 행정부담 측면에서는 사업자의 외형(매출규모나 납부세액)이나 조직규모가 더욱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이 미미한 소규모 법인에 대규모 법인사업자와 동일한 신고납부기간을 적용하는 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보다 기장 및 신고납부 여력이 뛰어난 대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신고납부방식이 아닌 예정고지납부 혜택을 주는 점 등을 보면 법인/개인 구분 기준은 형평에 어긋남
- 또한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매출규모나 납부세액 수준에 따라 우리나라보다 신고납부기간 및 예정신고/고지납부 방식을 보다 세분화하고 있는데, 이는 세수 확보와 납세 용이성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 영국, 독일, 호주, 일본에서는 공급대가 등을 기준으로 최소 3개 이상의 그룹으로 나누어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세분화된 신고납부기간을 적용하고 있음

- 또한 주요국들은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예정신고 의무를 면제하거나 예정신고방법(자가계산 또는 고지납부)을 선택하게 하는 등 납세순응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사업자를 세분화하고 각 사업자에 대해 다양한 신고납부기간 및 징수방식을 운영하는 것은 과세당국에게는 단기적으로 행정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경우 사업자의 납세 순응도를 높여서 장기적으로 세수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우리나라도 사업자를 법인/개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 등의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상이한 신고납부기간 및 징수방식을 차등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나. 대규모 법인사업자에 대한 신고납부기간 단축

- 주요국의 신고납부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국가인 영국, 독일, 호주 및 일본 모두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자에게 1개월의 신고납부를 요구하고 있음
 - 영국의 과세기간은 통상 3개월이나 연 납부세액이 230만파운드 이상인 사업자에 한해 1개월의 중간예납의무를 지우고 있음
 - 독일의 과세기간은 통상 1년이나 연 납부(환급)세액이 7,500유로를 초과하는 사업자는 1개월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함
 - 호주는 연 매출액이 2천만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1개월의 과세기간을 적용함
 - 일본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4,800만엔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1개월의 중간신고납부기간을 적용함
- 우리나라는 사업자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지만 일반과세자는 거래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하여 신고납부제도

를 운영함

-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제도를,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고지제도를 운영하는 차이만을 두고 있음
- 반면 법인사업자 내에서는 대규모 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자 간에 차별을 두지 않아 대규모 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자 모두 3개월의 예정신고기간을 적용받음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을 보면 대규모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총부가가치세 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림 II -4] 2012년 법인사업자 규모별 차감납부세액 신고비율’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과세표준 규모가 큰 대기업이 총차감납부세액의 상당 부분을 신고하고 있음
 - 2012년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1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총차감납부세액의 41.6%를 신고하였고, 그 중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총차감납부세액의 28.4%를 신고하였음

□ 따라서 주요국 사례 및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현황을 종합해 볼 때, 최소한 대규모 법인사업자에 한해 신고납부기간을 단축한다면 부가가치세 세수의 조기 확보 및 탈루 가능성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신고납부기간 단축방법으로 예정신고납부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거나, 1개월 단위로 예정고지·납부 후 3개월 단위로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대규모 법인사업자에 대한 예정신고납부기간 단축만으로도 부가가치세 세수의 상당 부분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어 국고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신고납부기간을 1개월로 단축한다면 신고납부 제반의무 준수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사업자가 내부교육을 강화하거나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탈루의 여지가 줄어들 수 있음

□ 그러나 신고납부 또는 고지납부기간을 단축할 경우 관할 세무서의 징세비용 및 해당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증가될 수 있으므로, 일선 담당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하여 그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함

- 세무서의 관리 및 감독 등의 추가적 행정력 소요가 예상됨
- 사업자의 현재 전문인력 확보 정도 및 회계·세무 전산시스템의 선진화 정도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상당할 수 있음
- 또한 사업자의 업무량 증가로 인해 과실이나 착오에 따른 가산세 부담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됨

□ 만일 신고납부 또는 고지납부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고자 한다면,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제 규정을 함께 정비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예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특례를 두고 있는데, 예정신고납부기간이 1개월로 단축될 경우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경과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므로 가산세 감면 등 관련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 － 월합계세금계산서제도에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가산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납부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는 것과 더불어 전면적인 가산세 규정의 완화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사업자의 신고납부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성실신고자에 대한 별도의 세제혜택 부여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참고문헌

-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 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10.
- 김형환, 『부가가치세 실무해설 2012』, 세경사, 2012
- 박명호 · 기은선 · 정경화, 『주요국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 조사』, 한국조세연구원, 2009. 12.
- 박종수 · 서보국, 『조세간소화를 위한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2. 3.
- 안종석, 『주요국의 조세제도 - 호주편』, 한국조세연구원, 2012. 5.
- 정기상,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의 확정 여부」, 『저스티스』 통권 제131호, 2012. 8.
- CCH, Japan Master Tax Guide 2003/04, 2010/11, CCH, 2003, 2010
- McCouat, Philip, Australian master GST guide 2011, CCH Australia, 2011
- 영국 국세청, Notice 700 The VAT Guide, May 2012
- _____, Notice 700/12 Filling in your VAT Return, October 2011
- _____, Notice 700/60 Payments on account, April 2012
- _____, Notice 732 Annual accounting, June 2010
- 국세청, <http://www.nts.go.kr/>
- 삼일인포마인, <http://www.samili.com/>
- IBFD, <http://www.ibfd.org/>
- 영국 국세청, <http://www.hmrc.gov.uk/>
- 호주 국세청, <http://www.ato.gov.au/>
-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

세법연구 13-04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운영현황

2013년 9월 23일 인쇄

2013년 9월 30일 발행

저 자 홍성훈·유지선·이형민

발행인 옥동석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3181-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ISBN 978-89-8191-657-2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